2020년도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2020. 4. 24.(금요일)

o 방　　법: 온라인심의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내용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9건(안건번호 제2020-14129호~1418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지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B 위원: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20-14129호~14188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본 심의 대상 제2020-14129호~제2020-14188호 안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음악저작물 69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D 위원: 금번 심의 안건은 '★★★★' 등 12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것으로, 해당 건들은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에 해당하고, 복제·전송자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으로 각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2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